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

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5

2022. 9. 28.(수)
정책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안지윤 의원 등 7인

나. 제출일자 : 2022년 9월 7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9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9월 16일

-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정책복지위원회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안지윤 의원)

가. 제안사유

○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자립지원대상아동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 조치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(안 제2조)

- 자립지원대상아동, 자립준비청년 등

○ 자립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 및 안 제6조)

○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을 규정함 (안 제7조)

○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·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8조)

○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협의체 구성,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9조 ~ 제13조)

○ 지원 사업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위임,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14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김대진 수석전문위원)

가. 제출배경

○ 원가족 양육 및 보호가 어려워 아동복지시설(아동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) 및 위탁가정에서 보호 중이었다 만 18세가 되어 보호 종료 및 시설 퇴소로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

○ 충북도내 보호종료아동(자립준비청년)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 검토

○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, 다른 조례와의 관계,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.

- 안 제2조는 조례안에 사용된 용어를 정의한 것임.

- 「아동복지법」 (이하 “법” 이라 함) 제16조에서는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18세에 달하거나,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도록 정하고 있음.
- 또한 법 제16조의3에서는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 연장 의사가 있는 경우, 보호기간을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이에 지금까지는 “보호종료아동(퇴소아동)” 이란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해 왔으나, 이는 상위법에서 정의한 용어가 아니며, 해당 용어 자체가 보호종료 당사자들에게 위탁가정 또는 아동복지시설 출신이라는 부정적 낙인효과를 준다는 지적, 연령상 19세부터는 아동이 아닌 성인(청년[3])이라는 점, 그리고 “보호” 라는 수동적 용어보다는 당사자 중심의 능동적 용어인 “자립” 이 타당하다는 측면에서 용어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음.
- 이에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‘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 (2021. 7. 13.)’ 에서 “자립지원 청년” 을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됨.
- 또한, 법 제39조에서는 퇴소 시부터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자립을 위한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하여 15세 이상 보호대상 아동에 대해서도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매년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교육 시행을 정하고 있는 바, 본 조례안에서는 자립지원 정책 대상에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, 이에 대한 용어를 “자립지원대상아동” 으로 사용하였음.
- 본 조례안에서 “보호종료아동(퇴소아동)” 대신 “자립준비청년” 을, “15세 이상 보호대상아동” 대신 “자립지원대상아동” 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내용상 타당하다고 판단됨.

3) 「청년기본법」 상 청년은 19세부터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, ‘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’ 는 단서 규정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청년의 용어를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음.

□ 아동복지법

제16조(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)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**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,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** 해당 **시·도지사**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**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**시켜야 한다.

제16조의3(보호기간의 연장)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연령이 **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**하여야 한다.

제39조(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) ① 보장원의 장, **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**은 보호하고 있는 **15세 이상의 아동**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**자립지원계획을 수립**하고,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**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**하여야 한다.

○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실체규정으로,

- 안 제5조는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·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6조는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을 위한 도 차원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7조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포괄적 내용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음.
- 안 제8조는 법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-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도 내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민·관 거버넌스 기구로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협의체의 기능, 구성, 임기, 위원장의 직무 등,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그 밖에 본 조례안에서 협의체 운영 등과 관련해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(이하 “기존 위원회 조례”라 함) 제5조(다른 조례와의

관계)에 따라 기존 위원회 조례를 따르게 되는 바,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는 문제가 없음.

□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.

○ 안 제14조는 보칙 규정으로, 조례안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제8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다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청년 취업난과 주거불안 등 이른 나이에 자립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서 기존 정부의 자립지원정책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, 지원 대상을 15세 이상 자립지원대상 아동 까지 확대해 좀 더 일찍 자립지원 정책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자립준비청년이 스스로 자립의 주체가 되어 본인의 삶을 주도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본 조례안은 도 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적 · 내용적으로 타당하며, 유관기관 간담회 및 조례안 예고, 집행부 협의를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「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　　호

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자립지원대상아동”이란 「아동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.
2. “자립준비청년”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.
3. “아동복지시설”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,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의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(이하 “자립준비청년 등”이라 한다)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5조(지원계획의 수립 등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법 제7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
2.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
3.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

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
2.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3. 제8조에 따른 충청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
4.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
5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④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.

제6조(실태조사)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자립준비 청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

제7조(지원 사업) 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 사업
2.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 사업
3. 자립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사업
4.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 건강 지원 사업
5.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
6. 아동복지시설의 관련 종사자 교육 지원 사업
7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자립지원전담기관) 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자립지원전담기관(이하 “자립지원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
2.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통합서비스 제공
3.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지역 자립지원 정보체계 구축
4. 지역사회 자원 발굴 · 네트워크 구축 및 자립지원사업 홍보
5.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
6. 자립지원대상아동 자립지원 업무지원 및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
7.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

제9조(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협의체)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충청북도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협의체(이하 “협의체” 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
2.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
3. 제8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협의체의 구성)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관계 공무원
2. 충청북도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
3. 제8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
4. 아동복지시설 종사자
5.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, 단체 및 기관 등의 종사자
6. 자립준비청년
7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③ 위원장은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11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 중 공무원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 기간으로 하고, 그 밖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3조(간사)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.

제14조(위임 및 위탁)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·군에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,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□ 아동복지법

제15조(보호조치) ①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전담공무원,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 · 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
2. 「민법」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 · 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
3. **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 · 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**
4. **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**
5. **약물 및 알콜 중독, 정서 · 행동 · 발달 장애, 성폭력 · 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**
6.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

제16조(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) ① **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**의 보호조치 중인 **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,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** 해당 **시 · 도지사**,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**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**시켜야 한다.

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,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.

③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, 아동을 상담 · 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. 다만,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 · 교육 · 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삭제

⑤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.

제16조의2(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) **시 · 도지사**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**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**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**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 · 관리를 제공**하게 하여야 한다.

제16조의3(보호기간의 연장) ①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연령이 **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**하여야 한다.

②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**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.** 다만,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**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 · 도지사 또는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.**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(대학원은 제외한다)에 재학 중인 경우
2.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「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·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
3.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·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제38조(자립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.

1. 자립에 필요한 주거·생활·교육·취업 등의 지원

1의2.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

2.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(이하 "자산형성지원"이라 한다)
3.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
4.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
5.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,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8조의2(자립지원 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, 생활 및 정서적·신체적 건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9조(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) ① 보장원의 장, **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**은 보호하고 있는 **15세 이상의 아동**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**자립지원계획을 수립**하고,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**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**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·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9조의2(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· 운영) ① 국가와 **지방자치단체는**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**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**.

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,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0조(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) 국가와 **지방자치단체는**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 · 운영,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,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,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**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**

제42조(자산형성지원사업) ① 국가와 **지방자치단체는**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 · 발전할 수 있도록 **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**

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 ·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52조(아동복지시설의 종류)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**아동양육시설**: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, 양육 및 취업훈련,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2. 아동일시보호시설: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3. **아동보호치료시설**: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

가.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,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나. 정서적 · 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 · 치료하는 시설

4. **공동생활가정**: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, 양육,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5. **자립지원시설**: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□ 지방자치법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 · 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 · 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 · 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 · 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□ 아동복지법 시행령

제3조(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수립·시행을 위하여 미리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**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**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보건복지부 소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된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시행계획의 변경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제38조(자립지원) ① **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**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2. 아동복지시설(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만 해당한다)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
3. 삭제
4. 삭제

② **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**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
2.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
3.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
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제78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

제79조(자문기관의 구성) ①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제80조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□ 아동복지법 시행규칙

제18조의2(자립지원계획의 수립)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아동의 적성 및 욕구 파악, 사회성 발달 정도 및 자립 능력 · 수준 등 아동의 상태 평가
2. 정기적 진로상담,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
3. 자립에 필요한 주거, 취업, 자산형성, 정서적 지원 등 공적 서비스 및 지역 내 후원 자원 연계

② 보장원의 장,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,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충청북도 내 자립지원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○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업 소요경비 등

3. 관련조문

○ 안 제7조(지원사업)

○ 안 제8조(자립지원전담기관)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 : 2022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, 필요사업 추계 및 물가상승률 고려하여 산출

-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(국비 매칭)
- 아동발달지원계좌(국비 매칭)
- 경계선아동 자립지원(국비 매칭)
- 자립지원전담기관(국비 매칭)
- 아동자립지원프로그램(도비)
-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(도비)
- 위원회 수당(도비)

나. 추계 결과 : 향후 5년간 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국·도비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계
세 입		4,315,465	4,671,617	5,134,027	5,640,475	6,197,567	25,959,151
국비		3,763,605	3,994,346	4,393,782	4,833,160	5,316,474	22,301,367
도비		551,860	677,271	740,245	807,315	881,093	3,657,784
세 출		5,187,528	5,699,523	6,264,723	6,884,240	7,565,708	31,601,722
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 (국비70%,도비12%, 시군비18%)		1,323,800	1,456,180	1,601,798	1,761,976	1,938,175	8,081,929
아동발달지원계좌 (국비70%,도비9%, 시군비21%)		3,263,049	3,589,352	3,948,289	4,343,119	4,777,428	19,921,237
경계선아동 자립지원 (국비70%,도비12%, 시군비18%)		60,750	66,824	73,507	80,858	88,944	370,883
자립지원전담기관 (국비80%,도비20%)		472,383	519,621	571,583	628,741	691,615	2,883,943
아동자립지원프로그램 (도비100%)		40,000	40,000	42,000	42,000	42,000	206,000
아동복지시설종사자교육 (도비100%)		26,546	26,546	26,546	26,546	26,546	132,730
위원회수당(도비100%)		1,000	1,000	1,000	1,000	1,000	5,000
재원 조달							
의존 재원	소 계	3,763,605	3,994,346	4,393,782	4,833,160	5,316,474	22,301,367
	보조금	3,763,605	3,994,346	4,393,782	4,833,160	5,316,474	22,301,367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551,860	677,271	740,245	807,315	881,093	3,657,784
	지방세	551,860	677,271	740,245	807,315	881,093	3,657,784
	세외수입						
지방채							
기 금							
특별회계							
시군비		872,063	1,027,906	1,130,696	1,243,765	1,368,141	5,642,571